

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8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이병도, 송아량, 이정인, 김화숙,
우형찬, 이영실, 송재혁, 김동식,
김용연, 김상훈, 유 용, 김태수,
김소양, 채유미, 김혜련, 서윤기,
오현정, 봉양순 의원 (18명)

1. 제안이유

-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,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5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장애인가족지원센터)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5조의2(장애인가족지원센터) ①</u> <u>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</u> <u>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</u> <u>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</u> <u>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</u> <u>장애인가족지원센터(이하 “센</u> <u>터”라 한다)의 사업 및 운영에</u> <u>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</u> <u>에서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</u> <u>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